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면제 대상을 ‘외국어교육 체류자격’으로 확대〉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2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정복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4.
3. 회부연월일 : 2026.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작문·시험 대비·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출입국관리 관계 하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체류자격을 ‘회화지도(E-2)’로 규정하는 등 용어 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강사 중 채용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를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자에서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 · 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u>외화지도 체류자격</u> 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 ----- ----- ----- ----- ----- ----- ----- ----- <u>외국어 교육 체류자격</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출입국관리법」 제18조¹⁾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의2²⁾는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등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학원법 상 제출 서류 및 출입국관리법 상 회화지도 체류자격 요건>

구분	제출서류
학원법상 외국인강사 제출서류	1. <u>범죄경력조회서</u>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결과를 포함)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상 회화지도 체류자격 사증 발급 첨부서류	1.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사본 - <u>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u> - 건강확인서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회화지도 체류자격’ 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5. 27.> <u>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u>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이러한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을 발급받기 위하여 이미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은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임.

한편, 외국인강사는 회화지도(E-2) 외에도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외국어교습 활동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을 통해 학원에서 외국어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

< 외국인 강사 자격기준 (자료 : 경상북도 교육청)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취업활동 범위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 설명	취업활동 범위
회화지도(E-2)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학원 강사
거주(F-2)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 학원설립 가능 ■ 외국어·보습학원 강사 ■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재외동포(F-4)	재외동포에게 부여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학원설립가능
공통사항	※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조	

- 현행 학원법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 받도록 하면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의 경우 사증 발급 과정에서 이미 국적국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중복적인 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반면, 회화지도(E-2)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으로 외국어교습에 종사하는 외국인강사는 학원에 채용될 때 학원법에 따라 별도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정안은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서 ‘외국어교육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외국어교육이 회화뿐만 아니라 문법·작문·독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면제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외국어교육과 관련한 체류자격으로 ‘회화지도(E-2)’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어교육 체류자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체류자격의 종류와 활동범위에 대한 정비 없이 학원법에서만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교육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양 법령 간 체류자격의 명칭 및 적용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법령의 해석·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회화지도(E-2) 외의 체류자격은 그 체류 목적과 자격요건이 서로 다르고³⁾, 체류자격 및 세부 유형에 따라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의 제출 여부 등에도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외국어교육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따라서는 체류자격 취득 과정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범죄경력 검증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르면, 거주(F-2)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세부 유형에 따라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 여부가 상이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호 나목 등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거 주 (F-2)	1.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요건 입증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해당자에 한함)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 ※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라목·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4. 삭제 <2023. 12. 14.>
--------------	--

□ 이에 ‘외국어교육 체류자격’의 구체적인 범위와 함께 체류자격 취득 단계에서의 범죄경력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면제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의 변경 없이, 학원법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실제 교육현장과 괴리가 있고, 외국어 교육을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